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68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정문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12. 5.

다. 회 부 일 : 2025. 12.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4장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정관의 기재사항, 이사회 구성, 임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 예산회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4장의 규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고 있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4장의 조항 중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 기타공공기관을 포함시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Ⅲ. 검토의견

1. 기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등)

현 행	개 정 안
○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u> ※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하여 이사회 구성, 임원 관련사항, 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중 일부규정을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하려는 것임	○ <u>공공기관의 운영</u> - <u>기타공공기관의 정관 기재사항 규정</u> - <u>기타공공기관에 경영목표, 예산, 운영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설치하도록 함</u> - <u>기타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양성평 등 목표를 위한 임원 임명 목표제를 정하도록 함</u> · <u>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 하고, 이사회에 그 의견을 제출함</u> · <u>주무기관의 장은 기타공공기관의 임원이 이 법에 따른 책임을 이행 하지 않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 우 해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 할 수 있음</u> · <u>기타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을 제 한함</u> - <u>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 회 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회계원칙을 따르도록 함</u> - <u>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 인에 출연·출자 시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u> - <u>감사원은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 계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음</u> - <u>기타공공기관의 장은 감사보고서, 감 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u>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직원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¹⁾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한하여 정관의 기재사항, 이사회 설치 및 구성, 임원, 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규율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정관의 기재사항, 이사회, 임원, 감사원 감사 등 일부사항을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함으로써 현행법에 기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임원 인사, 예산회계, 경영평가 및 감독 등을 규율하여 재정경제부의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1)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유형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유형별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음. 이러한 공공기관 분류에 따른 2025년 기준 공기업은 31개(시장형 14개, 준시장형 17개), 준정부기관은 57개(기금관리형 12개, 위탁집행형 45개)이며, 기타공공기관은 243개임.

[공공기관 유형 분류기준]

유형		분류 기준		
공기업	시장형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시장형			
준정부 기관	기금 관리형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	기금 관리 또는 위탁 관리
	위탁 집행형			정부 업무 위탁집행
기타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받도록 하고 있음.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현행법의 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기능조정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적용받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리·감독권 또한 주무부처의 장이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행사하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인적·물적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획일적으로 관리하기보다 각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확보하고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2023년 공공기관 운영 체제 개편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이 상향 조정²⁾됨에 따라 2022년 기준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고, 기타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³⁾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타공공기관 중에도 대규모 예산을 운영하거나 국민생활에

2) 2023년 1월 1일 현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원 기준은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총수입액 기준은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자산 규모는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되었음.

3) 2022년 62.9% → 2023년 74.9% → 2024년 73.4% → 2025년 73.4%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⁴⁾ 기관 운영의 공공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기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규율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타공공기관은 2025년 기준 243개에 달하며 연구개발목적기관, 보건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기 보다는 각 기관의 규모 및 업무성격에 맞게 차별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현행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4) 2023년에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정원은 300명 미만이나 총수입액은 각각 4,203억원과 1,720억원으로 총수입액 기준(200억원 이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자산규모 역시 각각 7조 8,489억원과 3조 6,370억원으로 자산규모 기준(30억원 이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음. 또한,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총수입액은 6조 2,151억원, 자산규모는 26조 9,486억원에 육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총수입액 1조 326억원, 자산규모 5조 1,984억원으로 그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조 단위로 기준을 크게 상회함에도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

있어 법률간 충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현행법 적용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기타공공기관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기타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립하려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한하여 정관, 이사회 설치 및 구성, 임직원의 영리업무 금지를 규정한 것은 해당 기관의 공공성 수준을 고려한 차등 규율의 결과로 기타공공기관까지 일괄 확대하는 것은 현행 차등 규율 체계 및 자율 운영 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u>	제4장 <u>공공기관의 운영</u>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u>공기업·준정부기관</u>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u>공기업·준정부기관</u> 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u>공공기관</u> ----- -----, ----- <u>공공기관</u>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② <u>공기업·준정부기관</u> 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u>공기업·준정부기관</u> 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u>공공기관</u> ----- <u>공공기관</u> ----- ----- -----, ----- -----.
제17조(이사회 설치와 기능) ① <u>공기업·준정부기관</u>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7조(이사회 설치와 기능) ① <u>공공기관</u>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u>공기업·준정부기관</u> 의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9. ----- ----- ----- <u>공공기관</u> ----- ----- -----.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3. <u>공기업·준정부기관</u> 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를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3. <u>공공기관</u> ----- ----- -----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공기업·준정부기관</u> 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2. <u>공공기관</u>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u>공기업·준정부기관</u> 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u>공기업·준정부기관</u> 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u>공공기관</u> ----- ----- <u>공공기관</u> ----- ----- ----- ----- ----- ----- ----- ----- ----- ----- -----.
제18조(구성) ①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① ----- ----- ----- -----.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u>공기업·준정부기관</u>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	1. ----- ----- <u>공공기관</u> ----- -----

현행	개정안
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u>공기업·준정부기관</u>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u>공기업·준정부기관</u>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정한다. 3. (생략) ② ~ ④ (생략) 제20조(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u>공기업과 준정부기관</u>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24조(임원) ① <u>공기업·준정부기관</u>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② ~ ⑤ (생략)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u>공기업·준정부기관</u>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u>공공기관</u> 2. -----<u>공공기관</u>----- ----- -----. -----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u>-----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임원) ① <u>공공기관</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u>공공기관</u>----- ----- ----- -.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u>공기업·준정부기관</u>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u>공기업·준정부기관</u>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u>기관장</u>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 ⑤ (생략)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u>의 실적을 재임 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⑦ (생략)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① 기관장은 그 <u>공기업·준정부기관</u>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u>공기</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u>공공기관</u>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 -----<u>공공기관</u>----- ----- ----- -----.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 ----- -----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u>--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기관장</u>-----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① ----- --<u>공공기관</u>----- -----<u>공공기관</u>-----

현 행	개 정 안
<u>업·준정부기관</u>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기관장은 그 <u>공기업·준정부기관</u>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u>공기업·준정부기관</u>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u>공기업·준정부기관</u>을 대표한다. ③ · ④ (생략) ⑤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u>공기업·준정부기관</u>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사기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생략)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u>공기업·준정부기관</u>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u>공기업·준정부기관</u>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	-----. ② -----<u>공공기관</u>----- -----<u>공공기관</u>-----. -----<u>공공기관</u>-----.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u>공공기관</u>----- -----.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 ----- ----- ----- ----- -----<u>공공기관</u>----- ----- ----- ----- -----<u>공공기관</u>----- -----

현행	개정안
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 -----. ②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 ----- ----- ----- ----- ----- ----- ----- -----공공기관----- ----- -----. ③ ----- -----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 ----- -----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 -----공공기관----- ----- -----.

현 행	개 정 안
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공기업·준정부기관</u> 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 ----- ----- <u>공공기관</u>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u>공기업·준정부기관</u> 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u>공공기관</u> ----- -----.
② <u>공기업·준정부기관</u> 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u>공기업·준정부기관</u> 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u>공공기관</u> ----- ----- --- <u>공공기관</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회계연도) <u>공기업·준정부기관</u> 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회계연도) <u>공공기관</u> ----- -----.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u>공기업·준정부기관</u> 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u>공공기관</u> ----- ----- -----.
② <u>공기업·준정부기관</u> 의 장은 공정	② <u>공공기관</u> -----

현행	개정안
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생략) 제40조(예산의 편성) ① (생략) ② <u>기관장</u>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u>기관장</u>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예산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u>----- ----- ----- ----- ----- -----. ③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u>----- ----- ----- -----. ----- -----

현행	개정안
1. ~ 7. (생략) ④ · ⑤ (생략) ⑥ <u>기관장은</u>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u>이 확정된 후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은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 ⑧ (생략)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u>기관장은</u>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의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① <u>기관장은</u>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u>기관장은</u>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	-----. 1.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예산</u>----- ----- ----- ----- -----. -----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u>----- ----- ----- -----. 제40조의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①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u>----- ----- ----- ----- -----. ②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u>--- ----- -----

현행	개정안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 결을 거쳐 확정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u>기관장</u>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 결을 거쳐 확정 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u>기관장</u>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 결을 거쳐 확정 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1조의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u>공기업·준정부기관</u>은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를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	----- ----- ----- ----- -----. ②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u>----- ----- ----- ----- ----- ----- ----- -----. ③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u>-----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u>공공기관</u>----- ----- ----- ----- -----.

현행	개정안
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생략) 제52조(감사원 감사) 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u>공기업·준정부기관</u>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u>공기업·준정부기관</u>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감사 결과의 보고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① <u>공기업·준정부기관</u>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감사원 감사) ① ----- -----<u>공공기관</u>----- ----- --. ② (현행과 같음) ③ -----<u>공공기관</u>----- ----- ----- ----- ----- -----.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① <u>공공기관</u>-----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1